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창작 장비 이용 지침

제정 2014.10.

개정 2015.07.

개정 2016.06.

개정 2019.01.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이하 '경기콘랩'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창작 장비 이용에 필요한 대상, 조건, 시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작공간 및 부속품) 경기콘랩 창작 장비의 이용공간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1. 촬영스튜디오(S1) : Sony Nex-FS700RH(카메라), Canon 5D Mark 3(카메라), UWP-V1(무선마이크), 블루스크린, 부조정실 등
2. 녹음실(S2) : MacBook Pro 15, M-Track 8X4M(오디오 인터페이스), RODE NT2-A(컨덴서 마이크) 등
3. 3D편집실(S3) : T3610 Workstation 등
4. 영상편집실(S4) : T3610 Workstation, Mac Pro 6Core 등
5. 장비실(S5) : 3D프린터 Projet 3510 SD, DP200(FDM) 등
6. 새벽별(L1) : iMac 19대, Macbook 5대, 키보드, 마우스 등

제3조(이용대상) 경기콘랩 창작 장비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촬영스튜디오(S1), 녹음실(S2), 3D편집실(S3), 영상편집실(S4), iMac, Macbook는 경기콘랩 회원으로 한다.
2. 장비실(S5)의 Projet 3510 SD은 경기콘랩의 선발심사를 거친 정규 프로그램 참가자 및 입주기업에 한하고 DP200(FDM)은 경기콘랩 회원으로 한다
3.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 프로그램 참가자 및 입주기업은 경기콘랩 장비실의 가동상황에 따라 승인제로 지원 한다

제4조(3D프린터 지원사항 및 이용조건) 경기콘랩 3D프린터 지원사항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Projet 3510 SD은 월 2회 지원에 한하여 1인당 출력물은 연간 2kg을 넘을 수 없고 (주재료 및 서포트재료 포함) DP200(FDM)은 월 2회 지원에 한하여 1인당 출력물은 연간 500g을 넘을 수 없다.

2. 시제품 프로토타입 프린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자, 3D 모델링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제작지원 받는 자는 결과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출력물 사진)
3. 경기콘텐츠랩은 프로그램 및 운영상 필요에 한하여 지원 사항 및 이용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경기콘텐츠랩 창작 장비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촬영스튜디오(S1), 녹음실(S2), 3D편집실(S3), 영상편집실(S4), 장비실(S5)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운영자의 관리하에 20:30까지 연장 할 수 있다.
2. 창작장비 담당자의 기술지원은 평일 09:30 ~ 18:00까지로 한다.
3. iMac, Macbook의 이용 시간은 평일 09:00 ~ 21:00까지로 한다.
4. 경기콘텐츠랩 프로그램 및 운영상 필요에 한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신청) 경기콘텐츠랩 창작 장비 이용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촬영스튜디오(S1), 녹음실(S2), 3D편집실(S3), 영상편집실(S4)는 경기콘텐츠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2. 장비실(S5)은 담당자와 유선통화 후 제작지원서를 작성하여 승인 받은 후 이용 가능하다.
3. iMac, Macbook은 경기콘텐츠랩 인포데스크에서 대여 대장 작성 후 이용 가능하다. (현장대여, 1인 1기기 대여)
4. 경기콘텐츠랩 프로그램 및 운영상 필요에 한하여 이용신청 방법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이용준수) 경기콘텐츠랩 창작 장비 이용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기콘텐츠랩의 창작 장비이용은 제3조(이용대상)에 따른다
2. 창작 장비는 지정된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는 사용을 금지한다.
3. 창작 장비는 허가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으며 조작미숙 등의 이유로 장비운용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랩의 시설, 기기, 장비, 비품, 기타 집기 등이 파손, 훼손, 유실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해당 이용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공간 운영 지침」 제26조(시설 및 물품의 훼손, 망실 등 변상)에 따른다.

제8조(이용수칙) 경기콘텐츠랩 창작 장비 이용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창작 장비 중 촬영스튜디오(S1), 녹음실(S2), 3D편집실(S3), 영상편집실(S4)을 출입할 때는 운영자가 동행해야 한다.
2. 제출한 제작지원서 및 대여 대장에서 제시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하드웨어 세팅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운영자와 상의한다.
4. 운영자의 승인 없이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설치 및 삭제하거나 메신저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다.
5. 외부장비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승인 하에 가능하다.
6. 하드디스크의 작업공간은 경기콘랩이 허용하는 부분에서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운영자는 해당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
7. 작업이 완료되면 이용자는 자신이 저장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여야 한다. 운영자와의 별도 협의 없이 남겨져 있을 경우 운영자는 해당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
8. 이용 중 장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운영자에게 알린다.
9. 이용 시 필요한 소모품은 이용자 본인이 준비한다.
10. 창작 장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네트워크를 해킹하지 않는다.

제9조(이용제한) 경기콘랩 창작 장비는 각 호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1.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공간 운영 지침」 제5조(출입제한), 제6조(행위의 제한)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경기콘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운영자는 이를 사전에 공지한다.

제10조(손실에 대한 책임) 경기콘랩 창작 장비 손실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장비 또는 제작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기타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원인과 책임소재를 고려하여 경기콘랩과 이용자 간의 협의로 비용 부담의 비율을 결정한다.
2. 장비가 분실되었을 때, 이용자가 동일한 모델로 대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분실장비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비슷한 수준의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영자와 함께 협의 및 장비테스트를 해야 한다.
3. 변상은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주일 내에 변상을 완료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변상시점과 변상방법을 약속, 합의하여야 한다.
4. 변상책임을 고의적으로 기피한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콘랩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